

【논문】

소문과 권력

- 16세기 한 사족 부인의 淫行 소문 재구성 -

이 숙 인

【주제분류】 한국전통철학, 동양철학일반

【주요어】 남명 조식, 淫行, 소문, 권력, 조선중기, 섹슈얼리티, 유교

【요약문】 이 글은 16세기 중·후반의 조선에서, 학계와 정계에 풍파를 일으킨 한 사족 부인의 음행 소문을 재조명한 것이다. 소문의 주인공 함안 이씨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晋州의 진사 하종악의 후처로 들어와 28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家奴와 음행을 저지른다는 그녀에 대한 소문은 곧 獄事로 전개되었다. 이에 이씨 배후의 ‘권력’과 南冥 曹植(1501~1570)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陰謀說과 庇護說이 제기된 가운데 논쟁으로 격화되었다. 여기에 경상 지역의 명사들은 물론 중앙 정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이 논쟁은 조선의 주연급 인사들이 총출연한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한 여성에 관한 사소한 소문이 공론화되고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권력 관계를 함축하는 사건이 된 것이다.

함안 이씨의 사건은 남명의 편지글과 정인홍의 글 그리고 진주 옥사에 대한 조정의 회의 기록, 퇴계의 편지글 등을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소문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각자의 방식대로 재구성되고, 인용의 인용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 소문의 구성은 여성의 性(sexuality)이 소재가 되지만, 혈연과 학연에 따라 입장과 주장이 서로 대립되었다. 이씨의 소문에 대해 남명으로 대표되는 하종악 전처 측근과 李楨(1512~1571)으로 대표되는 하종악 후처 측근이 서로 달랐고, 남명 문인과 퇴계 문인이 서로 달랐다. 소문 사건 이후에는 소문 그 자체의 문제보다 소문이 사건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상반된 기억과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남명과 이정의 손자들의 조부 옹호론과 노론계열 인사들의

‘남명론’이 있다. 소문을 보는 관점과 내용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첨가되고 각색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문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성에 관한 소문은 성별화된 위계질서를 지지하는 지식과 권력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은 여성의性に 대한 유교의 정치학과 사림 정치가 열리는 16세기 후반의 사회적 특성을 통해 의미화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문

이 글은 16세기 중·후반의 조선에서, 학계와 정계에 풍파를 일으킨 한 사족 부인의 음행 소문을 재조명한 것이다. 소문의 주인공 함안 이씨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晋州의 진사 하종약의 후처로 들어와 28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家奴와 음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이 여성에게 돌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소문은 곧 ‘淫婦獄’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함안 이씨 배후의 ‘권력’과 南冥 曹植(1501~1570)의 ‘권력’이 충돌하며 陰謀說과 庇護說 등의 치열한 공방이 일어났다. 여기에 경상 지역의 명사들은 물론 중앙 정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이 논쟁은 조선의 주연급 인사들이 총출연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¹⁾ 한 여성에 관한 사소한 소문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공론화되면서 다양한 권력 관계를 함축하는 사건이 된 것이다.

여기서 함안 이씨의 소문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사소한 이야기기가 아니다. 소문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각자의 방식대로 재구성되

1)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이 사건을 언급한 인사들로는 조식을 비롯, 이황, 이이, 기대승, 유희춘, 정인홍, 오건, 정탁, 정유길, 노수신, 이정, 이회안 등이 있고 선조도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후에도 김장생, 송시열, 이익, 안정복 등에 의해 이 사건이 파생한 담론의 생산은 계속되었다.

고, 인용의 인용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문은 몇 사람의 개인이 결부된 사적인 사건에 머물기보다 대중 속으로 확장되면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움직이는 매개물이 되었다. 즉 소문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과 하나의 주어진 상징적 체계 사이의 관계이자 사건으로서, 그것이 생겨난 연관관계의 틀 내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²⁾ 그런 점에서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은 여성의性に 대한 유교의 정치학과 사림에 의한 정치가 열리는 16세기 후반의 사회적 특성을 통해 의미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진주 음부옥’ 사건은 정만조에 의해 이미 상세하게 소개되었다.³⁾ 이 연구는 16세기 당시 자료를 통해 소문 사건의 추이와 각 주장의 내용들을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서술한 역작이다. 이를 통해 고담준론 속에 감추어진 사상계의 움직이는 실상과 욕망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폐쇄적으로 인식되어 온 조선의 학술활동이 학자들 상호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 효과가 있었다.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홀대되었거나 배제되었던 주제와 자료를 통해 ‘진주 음부옥’ 사건을 재의미화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것은 여성의 성(sexuality)과 소문을 논의의 중심에 놓는 방식이면서, 16세기 이후의 자료까지 섭렵하여 소문 재구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해석하는 작업이다.

여성에 관한 소문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성별화된 위계질서를 지지하는 지식과 권력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소문과 같은 장치는 어떤 실체를 이미지화하여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소문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심층에 깔린 집단적 기억에서 비롯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구조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2) 한스 J. 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 박동자·황승환 옮김, 세종서적, 15쪽, 18쪽 참조.

3) 정만조,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소문 사건은 어느 곳 어디서나 있어 온 일상적인 것이지만, 당대 명류대가들이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획기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소문에 대한 반응과 대응의 다양한 방식, 그 속에 함축된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 그것을 합리화하는 지식과 권력의 작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 속에 숨어 있던 익명의 개인에 대한 발견의 의미와 함께 풍문이나 소문과 같은 일상의 사건 역시 역사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글의 전개상 소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간략히 소개하였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전문을 인용하였다.

II. 소문의 재구성

16세기 중반, 진주에는 고 하종악의 후처 함안 이씨가 淫行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조선사회에서 여자, 특히 사족 부인의 음행은 풍기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이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었다. 소문의 옥사가 전개되어 함안 이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형추를 당하게 되었다. 이 옥사는 소문에 입각해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그 진위를 가려내고, 소문이 사실일 경우 행위에 합당한 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함안 이씨의 옥사는 아무런 물증이나 고백을 확보해내지 못했다. 국왕의 조정 회의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면서 소문 그 자체의 진위가 의문시되기까지 했다. 『선조실록』 및 高峯 奇大升(1527~1572)의 『論思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조정의 논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선생[기대승]이 아뢰기를 …… 晉州의 獄事는 본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나, 다만 동료의 말을 들으면 그 啓本이 이미 올라왔는데도 아직 指定한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외방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까만,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사건을 전년도에 刑推하고 금년도에 형추

하여 옥사에 관련된 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관계된 것이 라면 그만이지만, 어찌 그 가운데에 애매하게 형을 받고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계본이 들어왔으니 상께서 보신다면 절로 아실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빌미가 되어 큰 옥사가 되었으니, 이와 같은 사건은 상께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계본이 엇그제 비로소 들어왔는데 어제와 오늘은 齋戒로 인하여 보지 못하였고, 엇그제 잠깐 첫 장은 보았으나 자세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죄과가 드러난 것은 없는 듯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간통 사건은 가장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한 지방에서 말하여 끝내 公論에까지 나왔으니, 이는 이 사건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받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도 단서를 아직 얻지 못했다 합니다. 세간에 혹 미워 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끝내는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시 推考하였으나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잡지 못하여 3, 4차의 刑杖을 받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그 가운데 원통한 자가 없겠습니까.”⁴⁾

이 소문 옥사에 대해 중앙 정부 역시 나름의 고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규문 안의 은밀한 일과 관련된 소문이라 그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다, 高節之士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가진 남명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당시 왕의 측근에서 사건의 성격을 보고하던 기대승은 언어와 행보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기대승은 간통사건은 제대로 알기가 가장 어렵지만 공론화된 이상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기대승이 보기에 이 사건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퍼뜨린 무고일 가능성이 크다. 이 옥사는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론이 났다.

이즈음 남명은 당시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門人 오건⁵⁾과 정탁⁶⁾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강과 자정에게 주는 편지[與子強子精書]’

4) 기대승, 『논사록』下, 『고봉집』, 선조 2년(1569) 5월 21일자(『한국문집총간』 권40; <http://db.itkc.or.kr>).

5) 吳健(1521~1574)의 호는 德溪이고, 자는 子強이다. 남명과 퇴계 양 문호를 오가며 퇴계의 理氣哲學과 남명의 敬義哲學을 융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549년(29세)에 호행으로 복호하였고,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소문 사건이 일어난 즈음인 1567~68년 경에는 正言, 執義 등을 지냈다.

가 그것이다.7)

진주에 음부의 옥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소문은 세간에서 떠도는 것이었는데,8) 옥사가 일어났을 때 나를 제공자로 지목한 것은 음부의 남편인 하종악의 전처가 바로 내 죽은 형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나를 거론한 것입니다. 신임 감사가 부임해 와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죄인 서너 명이 옥에 갇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났으니, 그들이 원한을 품고 독심을 부리는 데 못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흉계를 품고 기필코 쏘아 죽이려 한다고 하니, 丙丁年[丙寅·丁卯]의 우려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양화가 일어나 온 집안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었으니, 하늘의 재앙이 人事 밖에서 갑자기 일어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바닷가[김해]로 가면 온 가족이 통곡하고 산[덕산]으로 가면 온 집안이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죽을 날은 멀지 않은데, 차분히 나를 돌이켜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9)

무진년(1568) 10월 27일에 쓴, 소문 사건에 연루된 편지 속의 남명은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혐의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남명을 발설자로 여겨 그 복수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명은 그 소문은 자신이 퍼뜨린 것이 아니라 세간에 떠돌던 것이라

6) 鄭琢(1526~1605)의 자는 子精, 호는 藥圃이다. 오견처럼 남명과 퇴계 양문호를 오가며 그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1565년(40세)에 成均館典籍에 올랐고, 이듬해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으며, 1569년(44세) 5월 21일에는 晉州儒生의 옥사 논의에 참여하였다(『선조실록』 2년). 1561년(36세)에 남명을 찾아뵙고 수업하였고, 남명이 소명을 받아 상경했을 때 한강까지 마중을 나와 영접하였다고 한다(『남명집』, 『編年』; 『약포집』, 『年譜』).

7) 이 편지는 오견의 집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아들 吳長이 문집편찬을 주관하던 鄭仁弘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다시피 이 글은 개인적인 격렬한 감정 표현이 많아 남명 문인 鄭述는 이 편지를 문집에 실지 말자는 뜻을 전했다, 정인홍은 오히려 선생의 이 편지에 자신이 보충한 글을 덧붙여 실었다(정만조, 앞의 글, 73쪽).

8) 원문의 ‘發之者在中道’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중도의 입장에 있었는데”(『남명집』, 이론편찬), 또는 “이 사건을 발설한 사람은 중도의 입장에 있었는데”(『남명집』, 한길사)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할 때 뒤의 문장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 필자의 방식으로 새롭게 번역해보았다.

9) 조식, 『興子強子精書』, 『남명집』(『한국문집총간』 권31); 『남명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율김, 한길사, 2001, 198~202쪽 참조).

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지 소문에 불과하던 것을 누가 관가에 고발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옥에 갇혔다 풀려난 ‘억울한’ 사람들은 왜 남명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정인홍의 부연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남명이 오건과 정탁에게 보낸 편지 『與子強子精書』에 정인홍이 부연 설명을 위해 첨부한 『仁弘誌』¹⁰⁾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하면 함안 이씨의 소문이 옥사로 연결된 것은 남명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정인홍의 글을 통해 그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천에 살고 있던 龜巖 李楨¹¹⁾은 새로 부임한 경상 감사 박계현¹²⁾의 방문을 받았다. 이때 이정은 당시 떠돌던 한 사족 부인의 음행 소문을 감사에게 은밀히 전해주며 관련자들의 심문을 요청했는데, 소문의 주인공은 작고한 黃江 李希顏¹³⁾의 후처였다. 지역의 사정에 익숙지 않았던 신임 감사 박계현은 접수된 사건을 김해 부사 梁喜(1515~1580)에게 의뢰했다. 양희는 정인홍의 장인이고, 이희안은 남명과 평

-
- 10) 정인홍, 『仁弘誌』(『與子強子精書』, 『南冥集』; 『한국문집총간』 31집; <http://db.itkc.or.kr>). 이것은 소문에 연루된 남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쓴 해명성 글인데, 이것이 실려 있는 판본과 그 후의 『남명집』에서 사라지게 된 경위 등은 정만조의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 11) 李楨(1512-1571)의 본관은 泗川, 자는 剛而, 호는 龜巖이다. 중종 31년(1536)에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고, 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청주목사로 재직할 때 정치를 잘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처음에는 인근에 귀양 온 宋麟壽(1499~1547)에게 배웠고, 나중에 퇴계의 문인이 되었으며, 남명과 교류하였다.
- 12) 朴啓賢(1524~1580)의 자는 君沃, 호는 灌園이다. 1543년(중종 38) 진사가 된 후 1552년(명종 7) 식년문과에 합격하였고 正字 등을 거쳐 1555년(명종 10) 賜暇讀書하였다. 서장관, 성절사로 명나라를 다녀왔으며, 대사헌, 병조판서, 중추부지사, 성균관 대사성 등을 지냈다. 1568년에 경상감사로 재직했다.
- 13) 李希顏(1504-1559)의 본관은 함천. 호는 黃江, 자가 愚翁이다. 중종 때 寧海府使를 지낸 李允儉의 아들이며, 金安國의 제자이다. 여러 번 벼슬에 천거되기는 하였으나 곧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연마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남명과 같이 유일로 천거되어 고령현감을 지냈다. 그는 기량이 크고 깊으며 재행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있다(『명종실록』 7년(1552), 7월 11일).

생을 道義로 우정을 나누던 벗이면서 멀지만 인척관계에 있었다. 황강 후처의 소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김해 부사 양희는 事案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박 감사의 동의를 얻어 함양에 살던 사위 정인홍에게 달려가 사건을 상의했다. 이에 정인홍은 황강 집안의 일이라면 남명 선생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⁴⁾ 이후의 상황은 정인홍의 글을 직접 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함양에서 곧바로 덕산으로 들어가서 선생께 모든 것을 고하였다. 선생은 버럭 화를 내시며 “剛而[李楨]가 한 집안에서 생긴 큰 문제를 은폐하면서 다른 집의 애매한 일을 들춰서 황강 집안에 재앙을 안겨주려 하다니!” 라고 하셨다. 그리고 선생은 감사가 황강 집안의 분명하지 않는 일을 갖고 옥사를 일으키고자 하면서 하씨 집안의 이미 드러난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황강 집안의 일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하셨다. 이어서 선생은 진사 하종악 후처의 음행 소문과 하종악의 孽妹가 이정의 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셨다. 나는 돌아가 이 모든 정황을 장인에게 알렸다. 장인은 감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한 말대로 일렸다. 감사는 마침내 하종악 집안의 시비와 중 원석 등을 체포하였다. 함안 이씨 부인의 중형제가 요직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 이씨 부인을 적극 변호하여 마침내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 그 죄를 묻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오히려 선생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 선생의 편지 글 중에 중도에서 나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¹⁵⁾

소문의 발설자가 누군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소문이 옥사로 이어진 것은 남명이 정인홍에게, 정인홍이 양희에게, 양희가 감사 박계현에게 전해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오건과 정탁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명이 말한바, “음부의 남편인 하종악의 전처가 바로 내 죽은 형의 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에서 소개한바, 오건과 정탁에게 보낸 남명의 편지는 바로 첫 옥사가 종결된 직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소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옥사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남명이나 모두 억울했다. 남명이 서술한바, 관련자들의 복수를 피해 김해로 덕산으로 옮겨다니

14) 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15) 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는 남명의 체모는 말이 아니었다. 편지의 이어지는 내용은 소문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소문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헛소문이 되게 한 자는 바로 자신의 벗 龜巖 李楨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은 구암에 대한 남명의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었다. 문인에게 보낸 남명의 편지는 말한다.

10년 전 剛而를 만났을 때, 내가 음부의 일에 대해 분개하면서 “공은 한 집안 사람인데 어찌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계집종을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강이는 입을 다문 채 대답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마음속으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리는 소문이 하종악의 한강변 밭과 밭 지기 종 몇 명을 음부로부터 받았더군요. 지금 일이 터지니 감사와 추관에게 적극 구원하기를 “이 일은 예전에 남명에게서 들었는데 남명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한 집안의 일이니 나는 직접 본 것이니 소문으로 들은 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비록 적을 토벌할 수는 없지만 어찌 간악한 자와 같은 편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전적으로 나를 지목해 유감을 풀려고 하니, 이는 강이가 滅族의 궁지로 나를 몰아넣은 것입니다.¹⁶⁾

이어서 남명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정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함안 이씨의 소문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정 자신이 감사와 추관에게 통보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 박계현을 대신하여 새 추관이 된 진주목사 崔應龍¹⁷⁾이 남명 자신을 방문했을 때 물었더니 이정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고, 오히려 ‘음부’를 적극 변호하여 그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정은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경상 감사에 鄭惟吉¹⁸⁾이 새로 부임하자 그와 친분이 돈독한 권력자 礪城

16) 조식, 『與子強子精書』, 앞의 책.

17) 崔應龍(1514~1580)의 자는 見叔, 李滉의 門人으로 1546년 장원급제하여 사관이 된 후, 持平·右副承旨 등을 거쳐, 진주목사를 거쳐 충청도관찰사·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그릇이 커 관직생활에서 많은 치적을 남겼고 학문에 도부지런하여 이황이 아끼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18) 鄭惟吉(1515~1588)의 자는 吉元이고, 호가 林塘이다. 동호서당에서 사가 독서한 후 대사헌·예조판서 겸 대제학이 되었고, 1567년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1572년 예조판서·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시와 문장에 능하였고

尉¹⁹)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 구원을 요청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힘을 써 죄인들이 석방되었다고 주장했다.²⁰) 이어서 남명은 말한다.

강이는 여기서 세 차례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하였고, 중간에는 ‘과연 그렇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거짓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현의 글을 논하고 敬義를 말하는 자가 할 일입니까? 그는 일찍이 彦久²¹)에게 아침하다가 뒤에 公擧²²)를 섬겼으며, 다시 친구를 재앙 속으로 빠뜨리고, 음부에게 뇌물을 받아 죽은 친구를 저버렸으니 의리상 끊어버려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사절했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난과 길흉은 봉우 사이에 서로 알아야 할 일이지 감히 언급을 했습니다. 일찍이 士論이 바야흐로 밝아진다고 들었는데, 公道가 암담한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벼슬할 수 있겠습니까? 尹子固²³)가 지난 가을 나

글씨는 송설체로 유명했다.

- 19) 宋寅(1516~1584)을 가리키는데, 그는 이황·이이·성현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했고, 만년에는 선조의 자문을 맡았다. 글씨에도 능하여 해서를 잘 썼으며 수많은 글을 짓고 썼다. 1526년(중종 21) 중종의 셋째 庶女 貞順翁主와 결혼하여 礪城尉가 되었고 명종 때 礪城君에 책봉되었다.
- 20) “其通書於我也曰, 人言騰播已久, 必先殺其婢與其夫, 將此意已通于監司推官云. 其實不然. 崔見叔(崔應龍字, 時爲晉牧.)訪我, 問之則全無是言云, 極力伸解之. 朴監司將欲盡放, 而在中道改牒曰, 有識者之言, 亦未出於正. 更推十年前婢子, 剛而於是, 知不能掩蓋, 忽致書於我曰, 燈下不明, 知之太晚, 無面目進見於左右. 又首其不明之罪於朴監司. 追及京中, 又謝於推官曰, 吾初爲人所瞞, 公等爲我所瞞云. 猶且委馳人於礪城尉, 極陳其曖昧. 都尉與吉元, 情分自童穉深篤, 到界卽欲放去, 剛而復相對終日, 無所不救, 用是卽解放.”(조식, 『與子強子精書』, 앞의 책)
- 21) 尹春年(1514~1567)을 가리키는데, 자가 彦久이다. 명종 즉위 후 正言을 거쳐 이조좌랑·修撰·持平·掌書 등의 요직을 두루 지냈으며, 1553년 대사간, 이듬해에 대사헌에 올랐다. 小尹의 영수인 윤원형의 세력에 가담, 그 독주체제의 구축에 힘쓰다가 윤원형의 실각으로 파직되었다.
- 22) 李樑(1519~1563)의 자가 公擧이다.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의 외숙이자 鄭士龍의 문인이다. 1555년 賜暇讀書하였으며, 명종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 獻納·修撰·校理·持平 등 언관직을 주로 역임하였고, 1563년에는 이조판서가 되었다. 윤원형·심통원과 더불어 三凶으로 지칭된 인물이다.
- 23) 尹根壽(1537~1616)의 자는 子固이고 호는 月汀으로 尹斗壽의 동생이다. 1558년(명종 1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注書·奉常寺主簿·연천현감을 지냈고, 1567년(명종 22)에는 賜暇讀書하였다. 1572년(선조 5)에는 동부승지에 이르고, 이어 부제학·대사헌·경기도 관찰사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와의 외교를 여러 차례 담당하였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

를 찾아왔을 때 이 일을 언급하며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공들이 이 재앙을 누그러뜨리려 하지만 이미 손을 쓸 곳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24)

남명에 의하면, 구암은 의리를 저버리는 데 익숙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성향이 강한 원래부터 문제적인 인물이다. 문인들에게 전달된 남명의 뜻과 감정은 급기야 함안 이씨가 살고 있던 하종악의 집을 부숨으로써 함안 이씨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다. 이에 毀撤을 단행한 주모자들이 옥에 갇혔다.

대사헌 朴應男²⁵⁾, 헌납 閔德鳳, 경연관 辛應時·鄭琢 등이 각기 卞州 유생의 옥사를 아뢰었다. 박응남과 민덕봉은 반드시 죄를 다스린 뒤에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하였고, 신응시와 정탁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사사로운 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지금 만일 기필코 죄를 준다면 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닐 듯하다고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 거짓으로 고소한 죄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집을 毀撤한 죄만은 어찌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 소신의 미혹한 생각에는 유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면 괜찮거니와 오늘날 저지른 유생들의 소행을 보면 선비의 행동이 아니고 바로 무뢰배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 曹植은 진주에 거주하였는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조식에게 말하였습니다. 조식이야말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인 데다가 유명한 인사였으므로 마침내 감사 및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초에는 그들을 잡아다 가두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해 마침내 석방하였습니다. 그 뒤에 推官들이 과직을 당한 것은 모두 조식이 떠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식이야말로 현자이니 반드시 헛말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므로 그 일이 이에 이른 것이며, 또 長者가 말한 것이므로 고을의 사람들이 또한 서로 전파한 것입니다.“하였다.

洪瀧이 아뢰기를, “지금 대사헌이 아뢴 말을 듣건대,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조정의 관료를 위협하고 回文이 나오기에 미쳐 그 집에 불을

났으며, 성리학에 밝아 성혼·이이 등과 교류하였다.

24) 조식, 『與子強子精書』, 앞의 책.

25) 朴應男(1527~1572)의 자는 柔仲이다. 李仲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53년(명종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언·수찬을 거쳐 六曹의 참의와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초에 바른 말을 잘 하기로 이름높은 諫官이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지르고 그 방을 훼손하였다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일은 모두 선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선생이 아뢰기를 “…… 조식은 河宗岳의 전처 소생 딸과 친척이고, 李楨의 첩은 하종악의 후처와 인척입니다. 이정은 은미한 일이라서 알지 못한다 하여 그를 비호하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서로 친하게 사귀고 지냈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조식은 이정더러 잘못했다고 하였고, 나이 젊은 사람들도 모두 이정을 두고 잘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종악의 아내가 失行한 일로 인하여 명류의 長者들 사이에 서로 틈이 벌어지기까지 하였으며 나이 젊은 사람들도 서로 배척하고 비방하니,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의논도 이에 따라 나누어졌으니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²⁶⁾

기대승은 “거짓으로 고소한 죄”는 묵인한다 하더라도 남의 집을 훼손한 죄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기대승은 고 하종악 후처의 옥사는 실적 근거가 없는 무고임을 분명히 했다. 함안 이씨의 음행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던 이전의 조정 회의에서 기대승은 “세간에 혹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끝내는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²⁷⁾고 한 적이 있다. 기대승에 의하면, 남명이 관련된 함안 이씨의 옥사사건은 특정 관계인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즉 근거 없는 소문이 남명의 권위에 힘입어 옥사로 전개되었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추관들이 남명의 ‘권력’으로 파면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賢者이자 지역의 長者인 남명의 한마디 말은 곧바로 진실이 되어 지역 유생들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했다고 보았다. 한편 남명을 찾아갔다가 사건의 전모를 들었던 子固 尹根壽(1537~1616)는 훗날 이 사건을 보는 자신의 의견을 적고, 蘇齋 盧守愼(1515~1590)의 논평을 소개했다.

남명 曹子建은 河宗岳의 처가 실행했다는 소문을 가지고 龜岩 李楨과 논의가 달라서 절교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소재는 부친상을 당하여 尙州에서 守制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남명은 평생 동안 관직을 좋아하지 않고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지내더니, 한 부인

26) 기대승, 『논사록』下, 『고봉집』, 선조 2년(1569) 5월 21일자.

27) 기대승, 『논사록』上, 『고봉집』, 선조 2년(1569) 4월 29일자.

의 실행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친구와도 절교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남명의 문인 柳宗智²⁸⁾가 소재가 한 말을 남명에게 전하자 남명은, “소재는 전해 들리는 말만 들었을 뿐, 나의 본정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을 것이다.”하였다.²⁹⁾

이상을 통해 진주 함안 이씨의 소문과 관련된 사건의 추이와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남명 및 정인홍이 서술한 ‘소문’과 기대승 등의 조정 대신들이 보는 그것은 차이가 있다. 또 남명과 정인홍 사이에도 작은 차이가 있다. 소문의 소재는 ‘사족 부인의 실행’ 문제이지만, 이것이 공론화되고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권력 관계를 함축하는 사건이 되었다. 여기서 이 소문을 구성하는 조건 및 요소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입장과 주장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소문 구성의 조건들

1. 여자의 性(sexuality)

남명의 시대, 16세기에도 여자의 행실은 소문 구성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그것은 풍기 단속의 차원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했다. 閨門에서 발생한 은밀한 행위가 공론화되어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소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선사회에서는 풍속의 정화를 들어, 여자들의 성 ‘생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합법화했는데, 이른바 ‘소문의 정치’, 風聞公事가 그것이다. 풍문공사란 사적 영역의 ‘소문’을 공론의 場으로 끌어내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다.³⁰⁾ 건국기의 대사헌 權近은 “풍문을 활용하지 않으면 人心을 바로

28) 柳宗智(1546~1589)는 南冥의 문인이다. 15세(1560년)에 鄉試에 장원을 하였으나 과거에 나가지는 않았고, 守愚堂 崔永慶과 교유하며 의리를 강명하였다. 己丑土禍 때 정여립의 당으로 지목되어 옥에 갇혔다가 죽었다.

29) 尹根壽, 『月汀漫筆』.

30) 풍문법은 원래 唐의 武帝 때 처음 채택되어 宋에서는 言路를 확대하는

잡을 수 없다”³¹⁾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治國의 중요한 방법이였다. 풍문공사는 “閨門의 애매한 일과 풍속을 더럽히는 따위의 일을 가리켜 말하는 것”³²⁾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모든 소문이 공론화되는 것은 아니다. 향리 공동체 사회에 떠돌던 ‘단지’ 소문이 공론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신을 주도하는 명망가의 개입이 필요했다. 고 하종약 후처의 소문이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남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한 사족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소문이 공론화될 위기에서 구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인홍의 글에 나타난바, 음행 소문의 원래 주인공은 고 하종약의 후처 함안 이씨가 아니라 고 이희안의 후처 이씨였다. 정인홍은 남명이 왜 고 하종약 후처의 소문에 개입하게 되었는가를 해명하면서 고 이희안의 후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초계의 이황강이 아내를 잃고 아직 재취하지 않았을 때, 한 창녀를 보살펴주다가 재취한 후 쫓아내 버렸다. 황강이 죽고 계실 이씨가 혼자 남게 되자 그 창녀를 질투하여 집안에 발을 못 붙이게 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씨의 규문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는데, 사람들은 이씨에게 원한이 있는 자들과 그 창녀가 함께 만들어낸 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박계현이 감사로 부임하여 사천으로 李楨을 방문했을 때, 이정은 비밀리에 황강 문중의 일을 말해주면서 관련자를 잡아 다스릴 것을 요청했다.³³⁾

정인홍에 의하면, 구암 이정은 자신을 방문한 감사에게 황강 이희안의 후처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며 옥사를 일으킬 것을 요청했다. 즉 구암이 아니었다면 고 이희안 후처의 소문은 그저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인홍이 밝힌바, 고 이희안 후처 이씨의 소문은 특정한 이해를 가진 자들에 의한 모함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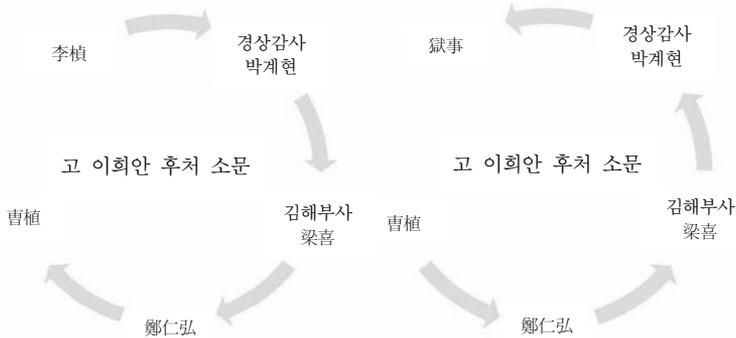
의미에서 활용된 것인데, 조선에서는 風紀를 단속하고 綱常을 정립하는데 적극 활용되었다(『선조실록』 3권, 2년(1569) 6월 4일(병자)).

31) 『정종실록』 4권, 2년(1400) 4월 1일(병신).

32) 『정종실록』 4권, 2년(1400) 5월 8일(임신).

33) 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음모라 하더라도 과부가 된 사족 부인에 대한 소문은 지역사회를 달구기에 충분한 재료가 되었던 것이다. 고 이희안 후처의 소문은 사천에 살던 구암 이정에서 출발하여 경상감사 박계현을 거치고, 김해부사 양희를 통해 함양의 정인홍에게 전달되었다. 함양에 살던 정인홍은 산청으로 달려가 남명 조식에게 알렸다. 여기서 소문의 주인공이 고 하종악 후처 이씨로 바뀌게 된다. 소문의 새 주인공이 된 함안 이씨는 산청의 남명에서 출발하여 정인홍을 거치고 김해부사 양희를 통해 경상감사 박계현에게 소개되었다.



소문이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 주제는 여전히 과부가 된 사족 여성의 성에 대한 것이다. 당대 내로라하는 명류대가들이 과부 여성들의 은밀한 소문에 왜 이렇게 민감한 것인지, 그 이해가 쉽지는 않다. 그 시대의 맥락과 가치를 통해 본다면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소문을 정치의 주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악한 짓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뜻이 있었다. 그것은 도덕에 의한 정치를 선포한 조선사회의 근본 지향과 부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문의 법은 ‘눈으로 보고 증거를 확인한 후’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사실 확인의 책임이 없는 소문의 정치는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만 용인되었다. 그것은 “大臣들의 不法이나 수령의 貪汚·虐民은 물론 婦女의 失行이나 자식의 不孝, 正妻 소박 등 綱常과 풍속에 관계되는 일체”³⁴⁾이다. 특히 士族 부녀자의 음란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다.”³⁵⁾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소문만 있으면 推覈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문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의 부정적 기능도 있어 조선 숲 시기를 통해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소문의 법, 즉 풍문공사는 私情이 아닌 公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公과 私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기능이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³⁶⁾

함안 이씨에 대한 소문이 들리던 처음에, 남명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맥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은 하종악 진사는 한때 자신의 姪壻이기도 했기에 그 후처의 불미스런 소문은 매우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보다 부녀의 행실, 자식들의 불효 등, 규문이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사건들이 공공의 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조선의 정치적 맥락에서 지역의 賢者로 존경받던 남명에게는 이 소문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을 것이다. 불효나 패역의 범죄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降號시키던 상황에서 그것은 향리 공동체가 함께 떠안아야 할 몫이었다. 특히 남명에게는 이런 소문 사건이 나기 수년 전의 일이 자료가 되었을 수도 있다. 남명의 생질 이준민이 강릉 부사로 재직하던 때인 명종 16년(1561) 4월에, 아들이 어미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義子가 계모를 蒸奸하려 하자 죽음으로써 반항하다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금부의 건의로 죽은 어미에게 旌表가 내려졌다. 그리고 강릉은 降號되었고, 부사 이준민 등은 교화

34) 『예종실록』 4권, 1년(1469) 윤2월 11일(병인).

35) 『성종실록』 176권, 16년(1485) 3월 26일(정미).

36) 이에 세조는 風聞으로 公事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과 그르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다고 하고, 전자는 풍문이 아니면 악한 짓을 행한 자를 징계할 방도가 없다고 하고, 후자는 풍문을 이용해서 참소와 간교함이 판을 친다고 하니 두 가지 설이 모두 그럴 듯하다고 했다(『세조실록』 36권, 11년(1465) 8월 2일(정축)).

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³⁷⁾

도덕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는 조선의 맥락에서 綱常과 풍속에 관련된 소문들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일선 정치가뿐만이 아니었다. 賢者나 長者 등의 향촌 공동체의 정신적 지도자들에게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손길이 닿은 행정 담당관에게 알려 심문토록 하고, 악을 응징함으로써 주변을 정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남명이나 구암이나, 또 그들에게 소문을 전해 준 사람들이나 왜 규문 여자들의 동태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는지 이해될 법도 하다. 즉 그들의 소문 ‘개입’의 행위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장하는 儒者의 사회적 의무이자 사회적 실천행위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에 의한 수사는 애매하거나 미묘한 영역을 밝히려는 목적이 강하여 私情이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다음의 글은 소문이 권력의 구성과 확대에 수단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들어보니, 공론이다 풍문이다 하면서 발설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의 은미한 과실과 閨中에서 일어나는 의심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허위로 죄를 만들어 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겁이 나서 감히 자신의 일을 끄집어내어 말할 수 없게 하는 한편, 威勢를 펼쳐서 하고 싶은 대로 用事하고자 하는 술책이었습니다.³⁸⁾

특히 “閨中の 일은 隱微하여 제대로 알기가 어렵지만 풍문이라 하여 국문하지 않는다면, 淫風의 횡행을 막을 길이 없다”³⁹⁾고 한 데서 소문의 범은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남명과 정인홍의 글에 소개된바, 남자들의 ‘대화’에서 주인공이 된 두 여성의 공통된

37) 『명종실록』 27권, 16년(1561) 4월 24일, 5월 11일. 자식이 어미를 시해한 것은 사실 천하의 大惡이지만 그 어미가 평소에 親生이 아닌 자식이라 하여 잘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 변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했다. 또 홍봉량이 추문을 당할 때 매를 이기지 못해 증간하려다 듣지 않아 죽었다고 誣服했다고 한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節婦의 서열에 끼게 된 계모를 비롯한 자들이 많아 정표를 세 차례나 세웠으나 세 차례 다 쓰러졌다고 한다.

38) 『중종실록』 86권, 32년(1537) 11월 7일(임오).

39) 『성종실록』 18권, 3년(1472) 5월 28일(갑자).

특징은 士族 출신으로 後妻이며, 자식이 없고, 과부라는 사실이다. 후처로 들어와 자식이 없고 과부인 여성은 이 사회의 시선이나 소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녀들을 둘러싼 소문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사실인지 아닌지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그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소문이란 일정한 문화의 체계 속에서 전달된 지식을 시의성 있는 어떤 사회적 상황에 투영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지식 및 가치의 체계라는 보다 큰 틀에서 분석되어야 할 문제이다. 소문의 구성은 단순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고, 그 사회의 역사 및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사회적 효과를 가지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2. 血緣과 學緣

사족 여성의 ‘失行’이 문제화되는 맥락은 사실 그 자체에 있기보다 서로 다른 이해와 입장이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소문을 구성하고, 소문에 반응하고, 소문을 재구성하는 등의 방식 및 태도들은 특정한 관계와 이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함안 이씨의 소문에 반응하는 태도의 차이는 정반대의 편에서 서로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차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가족적 유대나 친인척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적 만남과 토론을 통해 맺어진 인연, 즉 學緣이다. 소문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행위를 도출하는 데 이 두 요소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친인척의 사람들

함안 이씨의 소문에 대한 반응 혹은 입장의 차이는 고 하종악의 전처 측근과 후처 측근으로 나뉘어진다. 소문이 곧 진실이라는 주장은 남명을 중심으로 한 전처 측의 입장이고,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정을 중심으로 한 후처 측의 입장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이정의 직접적인 언급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함안 이씨의 음행 소문에 간여하는 남명의 논리는 公道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사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편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남명이 고 하종악 전처의 仲父라는 사실, 그 전처소생의 외종조부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남명도 이런 소문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소문을 발설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은 “음부의 남편인 하종악의 전처가 바로 내 죽은 형의 딸”이기 때문이라 했다. 하종악의 전처는 창녕 조씨로 남명의 형 曹粒의 딸이다. 남명의 질녀인 그녀는 金勵에게 시집간 딸을 남기고 남편 먼저 죽었다. 김려 또한 남명 문인으로 진주에 거주하고 있었다.⁴⁰⁾ 남명에게 외종손녀가 되는 하종악 전처의 딸이 부친이 남긴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계모를 음해하여 姦淫 소문을 만들어 남명에게 하소연했다는 주장도 있다.⁴¹⁾

고 하종악 후처 함안 이씨의 측근에는 구암 이정과 미암 유희춘(1513~1577) 등이 있다. 그들은 함안 이씨의 소문이 獄事로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며,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안 이씨와 구암의 관계를 남명과 정인홍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것은 구암이 소문을 대하는 태도가 객관적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⁴²⁾

편지에 의하면, 남명은 구암에게 “공은 한 집안 사람인데 어찌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계집종을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즉 하종악의 후처가 구암과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에 구암은 감사와 추관에게 이씨의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 일은 예전에 남명에게서 들었는데 남명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한 집안의 일이니 나는 직접 본 것이니 소문으로 들은 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40) 정만조, 앞의 글, 77-78쪽.

41) 유희춘, 『미암일기초』 戊辰七月, 初七·八日,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編, 280-281쪽.

42) “河之孽妹, 乃李楨之妾也”(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까?”라고 했다는 것이다. 남명과 구암 모두, 소문의 주인공 함안 이씨와 구암이 ‘한 집안’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함안 이씨와 구암 이정이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구암의 첩이고 하종악의 庶妹이기 때문이다. 하종악의 부친은 안의현감을 지낸 河湍인데, 嫡室에서 아들 하종악을 얻었고, 妾室에서 아들 河嶽과 딸 하나를 얻었다. 첩실에서 낳은 이 딸이 구암 이정의 첩으로 출가한 것이다.⁴³⁾ 적서로서 그 신분이 다르긴 하지만 하종악과 이정의 첩은 남매 지간이다. 따라서 하종악의 후처 함안 이씨와 이정의 첩은 시누이올케 사이가 된다. 남명의 주장대로라면 ‘不貞’행위를 한 올케를 시누이가 적극 옹호한 셈이다. 오라비의 처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시누이로서 사실 무근이라고 적극 변호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법도 하다. 정말 결백하거나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음모가 있거나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명은 후처에 무게를 두었다. 남명이 “뒤에 들리는 소문이 하종악의 한강변 밭과 밭 지기 중 몇 명을 음부로부터 받았더군요”⁴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정인홍은 또 “고 하종악 후처의 종형제가 요직에 있는데, 권세가 있어 이씨를 적극 도와서 그 일을 해결했다”⁴⁵⁾고 했다. 함안 이씨와 그 관련자들이 옥사에서 풀려난 것은 미암 유희춘이 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함안 이씨와 유희춘의 부인 宋德峯(1521~1578)은 사촌지간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대사헌을 지낸 李仁亨(1436~1497)은 함안 이씨의 조부이자 유희춘의 부인 송덕봉의 외조부이다. 즉 이인형의 4남 5녀 중에 셋째 아들 李翎(1483~1521)이 고 하종악 후처 함안 이씨의 부친이고, 이인형의 셋째 딸이 명종 때 부제학을 지낸 宋駿(1464~1543)의 부인이자 송덕봉의 모친이다. 함안 이씨의 소문을 해석하는 유희춘의 입장은 『미암일기초』에 언급되어 있다. 무진년

43) 정만조, 앞의 글, 77쪽.

44) “及後聞之, 則已受河宗岳漢江邊畚地及畚守奴數口於淫婦”(조식, 『與子強子精書』, 앞의 책).

45) “河婦從兄弟在要路, 有權勢, 李附之爲唇齒, 卒解其事”(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7월 5일자 일기에 의하면, 유희춘은 진주의 ‘음부옥사’ 소식을 남원에서 보낸 부인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하진사의 양자 陳海壽⁴⁶⁾가 진주에서 남원을 들러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소문 사건의 발생과 그 추이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유희춘은 진주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하종악의 처 이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렸다. 그리고 전날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한, 새로 부임한 경상감사 정유길의 집을 아침 일찍 방문했다. 정유길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가 이어 하종악 처 이씨의 억울함을 밝히자 정감사도 인식을 같이했다. 유희춘에 의하면, 대사헌 이인형의 손녀 함안 이씨는 28세에 喪夫하자 너무나 애통해하였고, 세수와 빚질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예로서 자신을 지켰다. 그런데 향리에 소문이 돈 것은 전처 딸 김려의 처 하씨가 부친의 재산을 독식하려고 계모를 음해했기 때문이다. 고을의 많은 사람들이 연명으로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都事 김일준이 무리하게 옥사를 전개시켰다고 하였다.⁴⁷⁾ 하종악의 처 이씨를 남명은 ‘淫婦’라고 하지만, 유희춘은 ‘하종악 처 이씨’로 호칭하였다. 함안 이씨는 시누이의 남편인 李楨과 종형제의 남편인 柳希春의 적극적인 옹호로 소문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이정과 유희춘은 입장을 같이 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로부터 3년 후 이정의 죽음을 들은 유희춘은 일기에서 “이 무슨 일로 선량한 사람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말인가”라고 하며 애석해했다고 한다.⁴⁸⁾

한편 남명은, 함안 이씨의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라는 차원에

46) 진해수는 하종악의 종형제 사위인데, 양자라고 하면 異姓立後가 되지만 이때는 侍養子의 의미일 것이다. 시양자도 양부모의 재산상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해수도 하종악가의 재산문제에 관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정만조, 앞의 글, 78-79쪽 참조). 그렇다면 진해수도 일정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보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47) 유희춘, 『미암일기초』, 280-281쪽.

48) 『선조실록』 5권, 1571년 8월 15일. 이정과 유희춘의 인연은 송인수를 매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송인수는 1543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갔는데, 그때 남평현감으로 있던 유희춘과 뜻이 맞아 학문적 토론을 했다고 한다. 이정은 초년에 송인수에게 배웠다.

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고 이희안 후처의 소문을 접하고는 크게 화를 냈다. 앞에서 본 바, 황강 집안의 일을 거론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어린 말을 하였다. 그리고 정인홍은 함안 이씨 소문 사건과 연루된 남명을 옹호하며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기보다 “황강 집안의 일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희안은 처음에 좌의정 權軫(1357~1435)의 증손녀이자 府使 權仲愼의 딸인 권씨에게 장가들여 딸 하나를 두었다. 후취 부인은 李漢禎의 딸인데, 자녀가 없었다. 이 후처가 소문 속의 여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황강과 남명은 멀지만 어머니 쪽으로 척족이다.⁴⁹⁾ 초계에 살던 이희안과 지역으로도 가까웠던 남명은 일찍부터 깊이 사귀며 한 집안처럼 지냈다고 한다. 남명은 이희안의 묘갈명에서 이희안의 후취부인 이씨가 남편의 상을 당하자 자결을 작정할 정도로 혼신의 정성을 다했고, 그 후 돈을 모아 비석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비문을 요청했다고 적고 있다.⁵⁰⁾

이 외에 김해부사 양희 또한 사위 정인홍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희는 사위 정인홍에게 사건을 일임하였고, 정인홍은 자신의 판단을 장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건의 초기에는 함안 이씨의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명단자’가 친인척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것 같다. 이로 볼 때 친·인척의 관계란 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河麟瑞 역시 당초에는 發明單子에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그 후 樾철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추고하여 심문해 보니, ‘당초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그 사촌 鄭夢祥[하종악 후처의 4촌]이 와서 애걸을 하므로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뒷날 다시 들으니 간통을 한 사실이 분명히 있었으므로 樾철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찌 모를 리가 있어 앞뒤의 말이 이렇게 달라진단

49) 李希顔은 호조참관을 지낸 李允儉과 통친 최씨의 2남3녀 중의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 최씨는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崔潤德(1376~1445)의 증손녀이다. 또한 최윤덕은 남명의 어머니 인천이씨의 외조부이기도 하다(조식, 『貞夫人崔氏墓表』, 『남명집』, 한길사, 2001, 296-299쪽; 정만조, 앞의 글).

50) 조식, 『軍資監判官李君墓碣』, 『남명집』, 283-285쪽.

말입니까.51)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에서 드러난바, 각 주장 및 입장은 친인척의 관계도에 따라 다르다. 16세기 이 소문 사건을 통해 본바, 실행의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친인척 여성을 적극 구원하고 옹호하려 한 남성들의 태도는 가부장제의 논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이나 며느리 등의 집안 여성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거나 단지 소문일 뿐이라 하더라도, 가문의 이름으로 남성 가족들에 의해 심판되고 응징되었던 가부장적인 관행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문 사건에 개입하는 남성들의 태도는 가부장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 學緣의 고리

소문을 보는 시각이나 소문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연 또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즉 학문적 만남과 토론을 통해 맺은 인연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 및 그것으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남명과 그 문인계열, 퇴계와 그 문인계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남명 쪽에는 정탁, 오건, 정인홍, 퇴계 쪽에는 이정, 기대승 등이 있다.

앞에서 본바, 함안 이씨의 소문이 옥사로 이어지고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풍파를 거치는 동안 남명은 말할 수 없는 곤란을 겪는데, 그런 상황은 남명의 문인 오건과 정탁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여기서 남명은 소문 그 자체의 진위보다는 그의 벗 구암 이정의 ‘배신’이 더 큰 문제였다. 남명의 편지는 구암의 행위와 속내, 그 실상을 문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남명은 추관들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문인들에게 토로했다.

“환난과 경사는 봉우 사이에 서로 알아야 할 일이기에 감히 언급했습니다. 일찍이 士論이 바야흐로 밝아진다고 들었는데, 公道가 암담한

51) 기대승, 『논사록』下, 『고봉집』, 선조 2년(1569) 5월 21일.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벼슬할 수 있겠습니까?”⁵²⁾

남명의 편지는 소문에 연루된 자신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방향을 문인들과 함께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를 사절했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말에서 보듯, 남명의 편지는 중앙과 지방의 문도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함안 이씨 측의 풀려난 관련자들이 재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2차, 3차의 형추를 통해서도 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관련자들은 다시 풀려났다. 이에 남명의 문도를 중심으로 직접 ‘죄인들’을 응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선, 이른바 ‘훼가출향’을 단행하였다.

기사년(1569) 5월 21일의 조정회의에서는 과격한 행동을 한 유생들의 처리를 논의하였다. 경연관으로 참석한 정탁은 “그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한편의 주장에 대해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사사로운 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지금 만일 기필코 죄를 준다면 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닐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명이 연루된 진주 옥사의 관련자들에게 죄를 묻지 말자는 정탁은 소문 옥사의 정황과 배경을 남명으로부터 이미 전해들은 바 있다. 정탁과 같은 편지를 받은 오건도 남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覺齋 河沆(1538~1590)에 의하면 진주의 ‘음부옥’이 일어나 그 비난이 오히려 士類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세력이 있어 은밀히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오건이 유독 분개하며 힘써 사실을 밝혀내자 그들의 거짓이 은폐될 수 없었다.⁵³⁾ 그런데 오건은 선조4년(1571)년 이정이 세상을 뜨자 왕의 명을 받고 제문을 짓기도 했다.⁵⁴⁾

한편 남명에게 절교를 당한 구암은 퇴계의 문인이면서 남명과는

52) 『與子強子精書』(조식, 『남명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옮김, 한길사, 2001, 198-202쪽).

53) “會晉州發淫婦獄，詰及士類，其婦有勢力，人多陰右。公獨憤之，力辨厥由，右者難蔽。不詰兩釋之”(『吳德溪傳略』, 『覺齋先生文集』).

54) 오건이 짓고 왕이 내린 제문에는 이정이 “국량이 넓고 깊었으며 풍모가 엄정하면서도 조용했고, 말을 가려가면서 했다”고 그려지고 있다(이정, 『龜巖集』 권2). 그리고 오건의 아들 吳長은 이정의 증손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정에 대한 오건의 입장에 대해서는 재확인 필요하다.

노후를 함께 할 계획까지 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소위 淫婦로 지목된 함안 이씨로부터 한강가의 전답과 노비를 뇌물을 받고서 그녀를 비호한다는 남명의 비방을 받고, 구암은 퇴계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퇴계가 구암에게 편지를 보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마다 서로 전하여 떠들어 대니 항상 의심이 없지 않았습시다. 曹君은 세상에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람됨이 깨끗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결백하여 세상을 벗어나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엿어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저 향리의 한 부인의 실행 여부가 그 무슨 더럽혀질 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 어찌다 그런 일을 말하면 마땅히 귀를 씻고서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 높은 절개를 스스로 깎아 내리며 남들과 시비를 다투는 데 마음을 모두 허비하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태껏 그만두지 않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은 불행하게도 이 변을 당하였지만, 또한 구태여 변명할 것도 없고 또한 슬퍼할 것도 없으며 또한 예전처럼 교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돌이켜 살피면서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고 허리를 꼴꼴하게 세워 仁과 禮를 마음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舜 임금과 같은 근심을 안고서 正直과 大義로 氣를 함양하며, 曾子和 같은 용기를 가지고서 초연하게 그 말을 듣지 않은 듯이 하고 말끔하게 그 일에 관련되지 않은 듯이 하며 까마득히 모르는 듯이 대처한다면,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참다운 즐거움이 저절로 무궁할 것이라 생각하니, 다른 것이야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만일 교분을 온전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을 밝히거나 합해지기를 구하는 뜻이 있으면, 나는 그대가 굴욕만 더 심하게 받게 되고 결국은 교분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⁵⁵⁾

남명이 뭐라고 하던 무시하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는 투의 조언이 퇴계 사후, 선조 33년(1600)에 간행된 『퇴계집』으로 세상에 공개되자 정인홍을 비롯한 남명 문도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즈음 이정은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병을 이유로 사양하며 절실한 뜻을 담은 상소를 올렸다. 그것은 “사람은 마음먹음이 덧없고 사물의 幾端은 매우 미묘하여 오늘의 淸明은 믿을 만하더라도 후일의

55) 李滉, 『答李剛而』, 『退溪先生文集』 22권.

持守는 더욱 우려된다”⁵⁶⁾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남명에게 절교를 당한 후의 복잡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명을 향한 소문과 시선을 의식한 남명의 高弟 정인홍은 스승의 행위를 적극 변론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이정과 제자 몇 명과 단속사에서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때 이정이 사족 부인에게 음행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 일을 드러내어 죄를 다스리겠는가 라고 물었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사족부인의 실행은 유사가 다스릴 일이고, 선비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겨를이 없는데 부인의 음행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선생은 河婦의 일을 발설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셨다. 황강 집안의 일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⁵⁷⁾

정인홍은 스승 남명과 같은 목소리로 이정을 비판했다. 정인홍은, 이정이 하종악家の 음부에게 쏠려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이회안 처의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⁵⁸⁾

여기서 소문을 다루는 기대승의 입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퇴계와의 왕복서신을 통해 상호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교환하던 사이이고, 이정과도 편지 등을 통해 학술 토론을 나누던 사이였다. 진주의 소문 옥사를 다루던 조정회의에서 기대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논법을 자세히 보면 남명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 기대승의 입장이란 퇴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정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함안 이씨의 소문은 “세간에 혹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⁵⁹⁾ 일파만파 커져 버린 그런 성격의 사건인 것이다. 또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보니 관련자들이 풀려났는데, “그 뒤에 推官들이 파직을 당한

56) 『선조수정실록』 선조 1년(1568) 8월1일.

57) 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58) “人皆言李楨之遽發李黃江家事者, 其意蓋欲窮問言根所出. 恐動人耳目, 以爲河家淫婦地也”(정인홍, 『仁弘誌』, 앞의 책).

59) 기대승, 『논사록』上, 『고봉집』, 선조 2년(1569) 4월 29일.

것은 모두 조식이 떠들어서 그렇게 된 것”⁶⁰⁾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함안 이씨의 집을 훼손한 유생들을 용서하자는 정탁과는 달리 “오늘 날 저지른 유생들의 소행을 보면 선비의 행동이 아니고 바로 무뢰배들이나 하는 짓이었다”고 하였다.⁶¹⁾ 그 어법은 남명에게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다. 이이의 『석담일기』에는 남명과 기대승이 서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젊은 적에 曹植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뜻을 얻으면 반드시 時事를 그르치리라.” 하였고, 대승도 역시 조식을 儒者가 아니라 하여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기대승이 조식의 허물을 말하였기 때문에 조식의 제자들은 기대승을 미워하였다.⁶²⁾

퇴계의 문인 李德弘(1541~1596) 또한 퇴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였다. “임훈이 퇴계에게 ‘남명이 제자를 시켜 음부의 집을 훼손하게 한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홀로 고사리를 뜯어 먹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자 퇴계는 ‘옳은 말’이라고 했다.”⁶³⁾ 朴愷(1549~1606)도 퇴계의 문호에서 일어난 대화를 자신의 방식대로 서술하고 있다.

무진년간에 진주에 한 음부가 있었다. ……이때 안음의 임참봉[갈천 임훈]이 퇴계선생을 방문했다. 퇴계선생이 “남명은 음부를 심하게 미워하여 문도를 시켜 북을 울리며 몰려가 음부를 쫓아내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하였다. 대답하기를 “남명은 덕산에 은거하며 소박하게 산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퇴계선생은 제생들에게 임군이 말을 잘한다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은 퇴계선생의 뜻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공

60) 기대승, 『논사록』下, 『고봉집』: 선조 2년(1569) 5월 21일.

61) 기대승, 『논사록』下, 『고봉집』: 선조 2년(1569) 5월 21일.

62) 『石潭日記』上, 선조 5년(1572), 10월. 이어서 이이는 남명과 기대승의 관계에 대한 남명 문인들의 태도를 소개하였다. 즉 남명의 문인 최영경은, 기대승이 남명을 ‘조정을 시끄럽게 만든 사람’이라고 했다 하여 기대승을 문제적 인물로 평가했다.

63) “林公薰來言於先生曰, 南冥令弟子等撤豐滯婦家, 甚不當. 莫如獨採我薇蕨也. 先生曰, 此言甚當”(이덕홍, 『溪山記善錄下』, 『良齋集』 6권).

자는 ‘사람이 仁하지 않다고 미워하는 것이 심하면 난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맹자는 ‘남의 불선을 말하면 後患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士師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였다.⁶⁴⁾

남명과 퇴계는 경상좌·우도라는 역사적 전통과 기질, 그리고 각 개인의 성품과 학문적 태도 및 현실대응 자세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상반된 입장은 교우관계와 문인의 성분에서도 나타나는데, 한 쪽이 科擧를 거쳐 중견관료로 진출한 부류가 많다면, 다른 한쪽은 남명처럼 出仕를 기피하고 유일로 자처한 부류가 많다.⁶⁵⁾ 퇴계와 남명의 차이에 대해 順菴 安鼎福(1712~1791)은 이렇게 정리했다.

退溪의 시대에는 이 道의 근원이 본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周濂溪의 太極圖說을 우선으로 삼았는데, 時義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曹南冥이 “쇄소응대의 예절은 모르면서 입으로만 天理를 말한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는 퇴계 선생의 본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금세에는 義理의 실이 이미 보편화되었으므로 학자들의 소행이 사실 남명이 지적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만큼의 세월을 살아오며 그러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학문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⁶⁶⁾

남명과 퇴계, 각 학문관의 어느 것이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 없고,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남명이 퇴계를 “上達을 주로 하고 下達을 궁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⁶⁷⁾고 한 것을 볼 때, 남명은 의리 실천의 맥락에서 현실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쪽인 것 같다. 진주의 사족 부인 음행 소문에 대한 반응에서 남명과 퇴계가 다른 이해를 가졌던 것도 이러한 학문관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64) 朴惺, 『晉州淫婦獄』 『大菴集』 제2권.

65) 이수건, 『南冥 曹植과 南冥學派』, 『民族文化論叢』 제2·3집, 218-221쪽.

66) 안정복, 『答南宗伯書』 『順菴集』 제8집.

67) 조식, 『與吳子強書』 『남명집』, 211쪽.

IV. 소문 이후의 담론

1. 자손들의 옹호 발언

(1) 李鯤變의 『疑訛拙辨』

앞에서 본바, 구암 이정은 이 소문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이정의 직접적인 발언을 담은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남명과 이정의 사후에, 이정의 손자 李鯤變(1551~?) 이 자신의 조부를 위해 쓴 변론이 이정 측에서 나온 유일한 자료이다.⁶⁸⁾ 이곤변의 자는 子學, 호는 百忍齋이다.⁶⁹⁾ 그는 선조 2년(1569)에 사마시에, 선조 12년(1579)에는 생원진사에 합격했다. 임진왜란 때는 統制使 이순신의 휘하에서 軍功을 세워 功臣錄에 올랐다. 『난중일기』에는 이곤변에 대한 언급이 몇 차례 나온다.⁷⁰⁾

이곤변은 자신의 조부를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절교를 선언한 남명의 선비답지 않은 행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남명이 문인인 오건과 정탁에게 보냈다고 하는 『與子強子精書』는 글의 정신이나 구성을 보건대 남명의 글이 아니라 중간에서 일 꾸미기 좋아하는 자가 조작한 것 같다고 했다. 남명은 기개와 도량이 우뚝하고 기절은 활달하여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명의 글 비판에서 이곤변은 ‘남명의 글이 아니다[不出於南冥]’는 논법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조부와 교류했던 남명을 직접적으

68) 李鯤變, 『疑訛拙辨』(李楨 編, 『壽瑞詩』,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 5704(M/F83-16-137-C). 1冊 40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 연도는 광해군 초년경으로 보고 있다.

69) “李百忍齋, 諱鯤變字子學. 東城人. 龜巖先生之孫. 早有文名, 成進士. 爲文章不爲碌碌語. 眉叟序之曰, 吾少時事梧里李相國, 相國每論南州人物. 必灑泗上李上舍傑出爲高人. 讀其遺篇. 信而好古, 有不汚穢於塵俗者”(朴敏, 『凌虛集』).

70) 李鯤變 등이 술을 가지고 뒤따라 도착했다. 밤늦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仇羅梁에서 잤다(『亂中日記』, 병신년(1596)년 8월 29일). 이른 아침에 비망의 나무 밑에 이르러 이곤변 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서로 헤어졌다(『亂中日記』, 병신년(1596)년 윤8월 초1일).

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남명의 글이 아니라 전제로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곤변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그는 먼저, 진주의 음부옥은 악을 미워하는 남명의 강직한 성격에 감정이 격분하여 유사에게 고발하여 공론을 일으킨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지만, 그것을 자신의 조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명이 편지에서 ‘여종 강물에 던지기’나 ‘한 집안 사람’ 운운한 것에 대해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공박하였다. 이곤변은, 조부의 측실인 하씨는 하종악의 庶妹인데, 첩의 嫡家 여종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 주인을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다고 해서 어떻게 첩의 嫡家 일에 나설 수 있으며, 감히 한 집안의 사람으로 자처할 수 있으며, 강에 던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만일 가내의 노비가 죄를 지었다면 官에 고발하는 것이 옳지 못어서 강물에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하물며 첩 嫡家の 婢子를 강물에 던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나아가 이곤변은 남명이 만일 자신의 조부인 이정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고 묻고, 사람을 묶어 강에 던지는 것은 온후한 군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이곤변은 “공은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한 말도 人情과 다르고, 또 자신의 조부가 “한 집안의 일인데 직접 보았다”고 했다는 남명의 말도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했다. 그것은 처첩의 이복동기라도 떨어져 있으면 한 집안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처첩 형제의 가속은 더욱 멀지 않겠는가. 또 설령 처첩형제의 가속이 失行을 했을지라도 그 정상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세속의 상정으로 볼 때 첩의 嫡宗[하종악]의 家屬이 불미스런 행위를 했다면 첩 역시 그녀를 원수로 여길 것인데, 자신의 조부가 진실을 덮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곤변은 남명은 이정에게 세 번씩이나 말을 바꾸었다고 한 말을 놓고, 만일 자신의 조부가 남명의 말대로라면, 그런 인물이 30년의 관료생활을 하며 어떻게 임금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

고 반문했다. 또 무엇보다 남명이 아끼던 문인 오건이 자신의 조부 구암을 위해 어떻게 賜祭文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남명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2) 曹浚明의 『反李鯤變拙辯』⁷¹⁾

『反李鯤變拙辯』은 남명의 손자 조준명⁷²⁾이 이곤변의 『의와졸변』에 대해 반론 형식으로 쓴 글이다. 조준명은 자신의 조부가 淫婦 사건과 관련하여 구암 이정과 의절을 했는데, 이후 구암의 손자 이곤변이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의 조부를 헐뜯고 그의 조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인 것이다. 그는 소문의 진실을 규명해 줄 구암이 남명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오건 집으로 갔다가 다시 구암의 아들 손으로 들어가 버려서 물증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본문은 편자가 구암이 私情에 이끌려 수차 말을 바꾸어 가면서 음부 이씨를 변호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증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예컨대, 남명과 이정이 무오년(1558)에 함께 지리산을 올랐을 때의 어느 밤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자게 되었는데, 그때 남명이 이정의 귀에 대고 하종악 후처의 실행을 은밀히 전해주었다고 이곤변이 주장했다. 그런데 그 후 무진년(1568)에 음욕이 갑자기 일어나서 의아했다고 한 이곤변의 주장에 대해 조준명은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조부 남명과 구암은 같은 방에서 잔 적이 없었음을 논증하였다. 조준명의 『반이곤변졸변』은 이곤변은 글을 실고, 그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남명과 정인홍이 주장한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林眞愨(1586~1658)가 남명학 계승을 위해 힘쓴 朴綱(1583~1640)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명 측 문인들이 이곤변의 글에 적잖은 신경을

71) 曹浚明, 『反李鯤變拙辯』(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5125-53), 1冊 22張, 木版本으로 구성되어 있다.

72) 생졸년 미상. 남명의 막내 아들이며 만호벼슬을 지낸 曹次疇(1560~1645)의 장남이다(정만조, 앞의 글, 80쪽).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³⁾ 조부를 위한 손자들의 변론은 16세기 후반 사림정치의 시대가 열리고, 조선사회가 성리학 지상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貞節 문제를 놓고 벌어진 사림 사회의 침예한 긴장과 대립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⁴⁾

2. 서인 계열의 담론

진주의 함안 이씨 소문이 파생한 문제와 관련 학자 간의 갈등을 ‘관중석’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 주로 김장생을 비롯한 서인계열의 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들은 이 소문 사건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들을 이미 열람한 후였다. 즉 남명이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 정인홍이 부연 설명한 글 그리고 퇴계가 이정에게 보낸 편지 등인데, 이것은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남명과 이정, 그 당사자들의 생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건이다. 金長生(1548~1631)은 辛慶晉(1554~1619)과 李貴(1557~1633)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남명과 퇴계는 본래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종악 妻의 옥사에 대해서 남명은 분명하고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불만스럽게 여겨서 그 門徒로 하여금 하종악의 집을 부숴 버리게 하고 그 처를 다른 읍으로 쫓아냈습니다. 또 李楨과 교분이 깊고 두터워서 일찍이 德山洞에 함께 살기를 약속하여 이정이 그 동네에 기와 집을 지었는데, 남명은 이정이 하종악 집안의 옥사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정이 하씨 집안의 뇌물을 받고서 差官에게 그 옥사를 늦추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 나머지, 곧바로 이정의 집을 부숴 버리고 또 絶交하는 편지를 써서 吳健 등에게 내보여 이정의 잘못을 들추어내었습니다. 퇴계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남명을 옳지 않게 여겼고, 이정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나는 공이 그러한 말을 꺼려서 애써 사실을 밝혀려 드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 몸을 굽혀 의견의 일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친구 사이의 일은 이 지방에서 소문이 났을 뿐 아니라 온 나라에 퍼져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털끝만큼도 관계없는

73) 林眞愨, 『與朴伯和』, 『林谷先生文集』 권4.

74) 권오영, 『反辨(反李鯤變拙辨) 附拙辨 해제』, 『남명학보』 5, 남명학회, 2006. 11.

일인데 두 사람 모두 저명한 선비로서 이처럼 등을 돌리기에 이르렀다.’ 하여, 괴이쩍게 생각하고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로서도 두 사람을 위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퇴계의 생각이 이미 이와 같고, 奇高峯 등 여러 선비도 남명의 행위를 비난하고 비웃자, 남명은 울분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고봉이 李俊民과 함께 똑같은 승지로서 하씨 집안의 일을 언급하다가 말하기를, “이 일은 남명이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이 노인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하여, 이준민이 남명에게 말하니, 남명이 크게 성내어 욕하기를, “기대승이 장차 나를 나포하여 국문하려고 한다.” 하여, 그 말을 장황하게 떠벌렸습니다.⁷⁵⁾

김장생이 본 소문 사건이 파생한 실상은 앞에서 소개된 자료들이 말해주는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소문의 주인공 함안 이씨를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가, 이정의 기와집을 부숴버렸다가 하는 것들은 서술자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의한 ‘소문 재구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퇴계와 남명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별려서 영남 남인의 화합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⁷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인의 남인에 대한 견제는 이 소문 사건에 대한 宋時烈(1607~1689)의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송시열은 “남명은 御史가 옥사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퇴계와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까지 하였네”⁷⁷⁾라고 짧게 언급했는데, 그는 이 소문 사건을 통해 유독 남명과 퇴계의 갈등을 보고자 한 것이다.

진주의 소문 사건을 언급한 사람으로는 閔仁伯(1552~1626)과 金柱臣(1661~1721)이 있는데, 이 또한 소문에 대한 ‘소문내기’의 맥락으로 보인다. 앞선 자료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남명 조식은 기질이 강한 선비이다. 일찍이 하종악 처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자 문도를 이끌고 그 집에 가서 우물을 퍼다 그

75) 김장생, 『答辛用錫與李玉汝』, 『沙溪全書』 권2.

76) 허권수, 『조선후기 南人과 西人の 學問的 對立』, 법민문화사, 1993. 59~61쪽.

77) 송시열, 『答權思誠』, 『宋子大全』 권39.

집을 씻어내게 하고는 돌아왔다. 이 일로 구암 이정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추악하게 비방했다. 퇴계선생이 구암을 위로한 글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다.”⁷⁸⁾

“남명은 평생 고고하게 세속을 벗어나 있었으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엄청난 낭패를 당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남이 어질지 않다하여 미워함이 심하면 난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남의 좋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에 따른 後患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성현의 짧은 이 말이 어찌 후인들에게 藥石이 되지 않겠는가.”⁷⁹⁾

논론에 의해 수정된 『선조실록』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인홍 등이 監司에게 통보하여 獄을 일으켜 다스리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고,” “嶺南 선비들이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몰아내는 풍습이 이때부터 생긴 것이며,” “영남 선비들의 분당의 병폐도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 것들이다.⁸⁰⁾

서인 계열의 인사 외에도 이 소문 사건은 사회현상에 민감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星湖 李瀾(1681~1763)은 淫獄에 연루된 남명의 행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남명의 훌륭한 명망으로도 이 陰事 때문에 죄를 면하지 못할 뻔하였는데, 奇高峯 등 여러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다행히 면하였으니, 이는 士大夫의 밝은 경계가 된다. 무릇 陰獄에 관계된 일에 대하여는, 일절 입을 다물고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보건대, 근세에도 가끔 연루되어 옥에 갇히니, 매우 두렵다.”⁸¹⁾ “『大學』에는 “뜻이 진실한 뒤에 마음이 바르다.” 하였지만 뜻은 비록 진실했을지라도 마음은 혹시 정당성을 벗어나는 곳이 있으므로 朱子는 이르기를 “비록 十分이 다 맑다 할지라도 그 맑은 이면에는 波浪이 움직이고 혼

78) 閔仁伯, 『摭言』, 『苔泉集』 卷4, 『한국문집총간』 59.

79) “……以南冥平生高蹈遐舉, 是宜翱翔乎塵垢之外, 而特因一時樞機之不慎, 乃有此無限狼狽, 良可惜也. 孔子曰,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 孟子曰, 言人之不善, 當如後患何. 聖賢片言半辭, 豈非後人之藥石耶”(金柱臣, 『壽谷集』11권, 『散言』下).

80) 『선조수정실록』 2년(1569) 5월 1일.

81) 이익, 『人事門·淫訟』, 『星湖僊說』 권7.

들리는 곳이 있다.” 하였다. 남명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나쳐서 淫婦의 집을 毀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음부는 비록 가증하지만 집을 훼손하는 일은 자기 임무가 아니라는 점을 자못 깨닫지 못한 것이다.”⁸²⁾

소문 사건을 보는 관점과 내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첨가되고 각색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문의 속성이 그렇듯, 부정확하지만 자신들이 얻은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나아가 추측과 해석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소문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공식채널에서는 어디까지나 모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익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소문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소문내기와 소문 전하기의 과정은 ‘대화’ 혹은 ‘수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 대화와 수다, 각 언어가 함축하는 의미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 경계는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수다를 여성들의 것으로, 대화는 남성들의 소통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수다이든 대화이든,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그것은 ‘정보에 관한 욕구’ 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서 여성들, 특히 성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태도는 도덕적 심판관의 외피를 걸친 소문에 의해 대상화되고 타자화되어 왔다. 즉 소문은 실재와 환상이 혹은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재각인시키는 문화적 실천이다.

16세기 소문 사건의 주인공 함안 이씨나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이희안의 후처 이씨나 역사는 그녀들을 기억해주지 않았다.⁸³⁾ 함안 이

82) 이익, 『退溪南冥』 『星湖僿說』 권10.

씨의 경우, 소문의 혐의로부터 벗어났지만 남성 지식인들이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여전히 ‘淫婦’이다. 한편 함안 이씨의 ‘배후 권력자’ 유희춘은 그녀의 실행 소문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그녀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극도의 애도 속에서 예로서 자신을 지켰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소문 속의 여성은 ‘음부’ 아니면 ‘열녀’로 존재하는 것이다.

16세기 조선이라는 역사 공간에서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함안 이씨와 같은, 그런 익명의 개인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열망과 애환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들려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나 세상 풍경은 인간 역사의 또 다른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후처로 시집와 28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함안 이씨는 남성 지식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었지만, 그녀에게도 개인의 역사라는 게 있었다. 전통사회가 개인을 파악하던 방식을 적용할 때, 그녀는 김종직의 문인으로 대사헌을 지낸 李仁亨(1436~1497)의 손녀이자 典籍을 지냈던 기묘명현 李翎(1483~1521)의 딸이다.⁸⁴⁾ 자녀를 통해 그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증조부와 조부로 이어지는 사족의 계보 속에서 미약하나마 ‘익명’으로 처리된 그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규문 안 소문에 개입한 남명의 행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가능하지만, 실천 지향의 그의 학문관과 연관시킬 때 적극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실제로 남명의 사상과 인품을 소재로 하여 이후 생산된

83) 황강 이희안의 생애를 담은 『黃江實紀』에는 후처 이씨의 존재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남명에 의하면 이씨 부인은 이희안의 배필이 된 지 5년만에 喪夫하였고, 남편의 상례를 정성껏 치렀으며, 남편 따라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한 여성이다. 그리고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남편의 비석을 마련하여 남명에게 비문을 부탁한 전형적인 烈女이다(조식, 『軍資監判官李君墓碣』, 『남명집』, 283-285쪽 참조). 그럼에도 황강 개인의 역사에서 후처 이씨가 사라진 것은 아마도 失行 소문이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84) 그녀의 조부 이인형은 세조 14년(1468)에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응교, 사간 등을 거쳐 대사간, 전라도 관찰사, 대사헌을 거쳐 연산군 3년(1497)에 한성부 좌·우윤을 지낸 인물이다. 함안 이씨의 증조부 李敎는 成均司成이었는데, 세종7년(1425) ‘有妻娶妻’의 문제로 杖90대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다. 즉 본처 최씨가 45세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자 이혼하고 姜非虎의 딸 강씨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본처 최씨의 부친이 관에 고발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남명 설화 중에는 이 소문 사건과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 것이 있다. 설화 속의 남명은 호기가 있던 젊은 시절, 駿馬, 寶劍, 名姬를 선호하였다. 그 중 유독 명희를 얻지 못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관동 지방을 지나다 빨래하고 있던 미색을 만났다. 그에 이끌려 따라갔는데, 중과 사통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죽인 음녀를 발견하고 두 남녀를 처단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남명은 외물에 유혹된 자신을 자책하며 말을 놓아주고 칼을 부러뜨린 후 글공부에 전념하여 큰 선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⁸⁵⁾ 남명의 학문과 실천이 요청되는 사회적 토양 속에서 부녀의 실행 소문에 개입한 사실이 설화의 재료가 되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투 고 일: 2011. 5. 09.
 심사완료일: 2011. 5. 16.
 게재확정일: 2011. 5. 16.

이숙인
 서울대학교

85) 윤주필, 「설화에 나타난 도학자상」, 『남명학연구』 7집, 181쪽.

참고문헌

- 曹植, 『南冥集』,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옮김, 한길사, 2001.
- _____, (교감국역) 『南冥集』,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이론과 실천, 1995.
- _____, 『南冥集』, 『한국문집총간』 31집(<http://db.itkc.or.kr>).
- 『조선왕조실록』
- 李楨, 『龜巖集』.
- 李珥, 『石潭日記』.
- 李滉, 『退溪集』.
- 奇大升, 『高峯集』.
- 柳希春, 『眉巖日記草』.
- 金長生, 『沙溪全書』.
- 宋時烈, 『宋子大全』.
- 閔仁伯, 『苔泉集』.
- 李德弘, 『良齋集』.
- 李瀾, 『星湖僊說』.
- 安鼎福, 『順菴集』.
- 朴敏, 『凌虛集』.
- 李鯤變, 「疑訛拙辨」(이정 편, 『壽瑞詩』),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 5704.
- 曹浚明, 「反李鯤變拙辯」,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5125-53.
- 강동욱, 「『黃江實紀』 해제」, 『남명학연구』 10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0.
- 강정화, 『남명과 그의 벗들』, 경인문화사, 2007.
- 권오영, 「反辨(反李鯤變拙辨) 附拙辨 해제」, 『남명학보』 5, 남명학회, 2006.
- 오이환, 「南冥集 諸板本の 刊行年代」, 『남명학연구』 29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0.
- 윤주필, 「설화에 나타난 도학자상」, 『남명학연구』 7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7.

- 윤호진, 『남명의 인간관계』, 경인문화사, 2006.
- 이문희, 『소문의 구성과 상상의 유통』, 서울대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수건, 「龜巖 李楨의 가계와 生涯 및 ‘退南’과의 關係」, 『안동사학』 9·10집, 안동사학회, 2006.
- 정만조,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 清水 幾太郎, 『流言蜚語의 社會學』, 이효성 역, 청람문화사, 1977.
- 클라우스 틸레 도르만 지음, 전옥례 옮김, 『수다의 매력』, 새로운 사람들, 1997.
- 한스 J. 노이바우어 지음, 박동자·황승환 옮김,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 허권수, 『조선후기 南人과 西人の 學問的 對立』 법인문화사, 1993.

ABSTRACT

Rumor and Power: An Intimate Approach to Rumor
of Adultery by an Upper-class Woman during the
16th Century Chosun Dynasty Period

Lee, Sook-In

This paper attempted to reexamine the rumor of a woman's adultery, which raised a disturbance in academic and political sectors in the 16th century Chosun Dynasty period. The woman, whose family name is Lee and whose family clan is Haman, and i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rumor, became the second wife of Ha Jong-Ak, a rich, upperclass man in Jinju(晉州) county in Kyung-sang province. She became a widow at the age of 28. The rumor that she had engaged in an obscene act with her slave developed into a great controversy between those who advocated for her and those who opposed her. Cho Sik(曹植, 1501-1570), a great scholar, was a representative of the group that opposed her. Many political lead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prominent figures of Kyung-sang province, also took part in the controversy. This great dispute reminds of a drama in which all of the major figures of the Chosun Dynasty appeared. A trivial rumor about a woman increasingly expanded into public opinion, and finally developed into an affair, which had various poli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explored the meaning of this rumor and affair by concentrating on the social

context of the latter part of the 16th century.

Keywords: Cho Sik, Rumor, Ha Jong-Ak, Power, Woman's Adultery, Sexuality, Confucianism, Chosun Dynasty